

# 석유비축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金 東 植

〈석유개발공사 건설본부장〉

**모든** 자원중에서 특히 석유의 비축필요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석유소비국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국가도 산유국으로부터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석유비축은 다른 에너지정책, 예컨대 원유도입선다변화 정책이나 유전개발 정책과는 달리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 위기가 발생할 때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1차 석유위기 당시 OPEC국가들의 원유수출금지(Embargo)조치로 인해 원유 공급량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위기를 경험한 美國, 유럽등의 선진제국을 비롯하여 지구상의 모든 석유소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물량의 석유비축을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정책 대안중 하나로 채택해 왔다.

지난 70년대에 겪은 두차례의 석유파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73년 제1차 석유파동때 배럴당 3달러정도였던 국제원유가격이 하루아침에 11달러 이상으로 올라 모든 석유소비국들은 국제수지적자와 극심한 인플레 등을 겪으며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78년 제2차 석유파동때는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최고 40달러 수준까지 급등하여 세계경제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주었지만, 美國, 日本, 프랑스 獨逸등 선진국들은 제1차 석유파동이후

석유비축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제2차 석유파동 때는 비축물량을 방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는 석유를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에너지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비축된 석유는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석유파동이 국민경제에 미친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모두가 생생히 기억하듯이 유가의 급등으로 물가는 40%이상 상승하였으며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되고 국제수지는 악화되었으며 경제성장은 문화되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석유 한방울이라도 더 사려고 새벽부터 주유소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으며 정부는 원유확보를 위해 산유국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뼈아픈 경험을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서야 석유비축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79년 석유개발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원유 3천8백만배럴을 비롯,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제품 1백80만배럴과 LPG 약 11만 2천톤을 비축하여 웬만한 석유위기의 충격은 정부비축유를 방출하여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

## 1, 2차 석유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발 발 위 생 생 위 시 원 기 내 용	1 차 위 기			2 차 위 기		
	1973년 제4차 중동전 산유국의 석유무기화 - 유가인상 : 2.59→11.65\$/B - 석유감량공급	1979년 이란 혁명 이란단유 감축생산 - 유가인상 : 12.95→28.0\$/B - 300만B/D 부족 (세계수요의 5%)	· 소비억제 대책실시 · 비축강화 · 소비억제 대책실시 · 정유사, 대리점 감량공급	· 비축물량 방출 · 소비억제 대책실시 · 비축실시 · 안정기금제도 도입		
수입국의 대응조치 (선진국)						
(한국)	· 소비억제 대책실시 · 비축강화 · 소비억제 대책실시 · 정유사, 대리점 감량공급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1972	1973	1974	1978	1979	1980
유가인상율 (%)			198.3	3.7	74.1	105.9
G N P 성장율 (%)		14.9	8.0	11.6	6.4	△6.2
도매물가상승율 (%)	13.8	6.9	42.2	11.7	18.8	38.9
실업률 (%)	4.5	4.0	4.1	3.2	3.8	5.2

는 자생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이에 따른 다국적군의 개입으로 '91년 1월 걸프전이 발발하자, 국제석유시장은 또다시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동안 걸프지역으로부터의 석유도입 의존도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제2차 석유위기에 버금기는 대규모 사태에 심각한 혼란없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는 비축유의 보유덕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우리국민 모두가 절실히 실감하였으리라 생각한다.

당시 국내에서는 위기의식에 따른 가수요 발생으로 인해 등·경유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수도권 민생용 유류의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었으나 적기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등·경유를 24시간 무제한 방출함으로써 수도권 수급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고 원유 선적불가 또는 지역으로 인한 정체시설 가동중단을 방지하여 국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고가원유 도입억제를 위해 비축유를 약 5백60만배럴(91년 소비량기준 약 5일분)을 방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절감함으로써 유가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

를 거두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석유위기란 과거 20년동안 5년을 주기로 반복되어 왔으며 국가가 석유위기에 대처할 적절한 대응수단을 가지지 못할때 이는 바로 국가위기로 직결된다는 인식의 맥락하에서 지금 세계각국은 석유비축에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주요각국은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소비국들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71년 「국제에너지 계획에 관한 협정(IEP)」을 체결하고, 그 실행기구로서 OECD내에 국제에너지 기구(IEA)를 설립하여 석유위기시에 대비한 비축사업에 있어 자구책 및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IEP에 따라 각국은 기본적으로 90일분이상의 비축물량을 확보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추진중에 있다. 최근 독일이 '87년에 125일분, 일본이 '89년에 160일분, 대만이 '90년에 120일분으로 비축목표를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프랑스는 '88년에 비축기관(SAGESS)을 설립하고 미국은 국가비축 물량을 10억배럴로 증강하는 등 90일분 이상 비축을 위해 세계 주요각국은 온힘을 쏟고 있다.

이와같은 국제적 석유비축 동향에 맞추어 우리나라

### 정부의 추가 석유비축계획

(단위 : 백만배럴)

	시설 용량	비축량	건설기간
원유제 P	45 · 7.5 16만톤 계 수	40 7.0 16만톤	'90 ~ '96 '90 ~ '96 '90 ~ '95 '90 ~ '96
G			

라 석유비축정책 역시 정부비축 60일분외에 민간부문에서 운영재고량으로 보유하는 물량 30일분을 합해 통상적으로 90일분의 석유비축량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비축부문에서 60일분 목표를 달성하였던 물량이 '88년 올림픽이후 국내 소비의 급속한 증가로 현재는 약 40일분 수준으로 떨어졌고 추가비축이 없는 한 '90년 중반에는 30일분, 2000년에는 20일분 정도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최소한의 위기관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유비축의 물량확대가 절실히 요구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정부 및 당공사에서는 가능한 비축수준을 배가시키는 2단계 비축증강계획을 확정('90.2)하여 '96년까지 정부비축 목표 60일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비축기지 건설의 공기내 완공을 위한 노력이 현재 일부 비축기지 건설 후보지에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심화되고 있는 이른 바 님비현상(지역 이기주의 : Not In My Back Yard)이다.

지자체 실시이후 시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 공익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내땅, 내주변에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는데 주민들은 첫째, 다른 장소도 많은데 하필 내집앞이냐 하고 반발들을 한다. 그러나 비축기지 입지선정은 그리 손쉽고 간단한 일 이 아니다. 아무곳이나 탱크를 만들어 담아 놓거나 굴을 파 그속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지선정은 국토의 전지역을 현지답사, 지형·지질조사를 하고 수요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후 안보 및 안전성등 지역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 후 건설과 운영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이후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둘째로 화재나 수질오염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이다. 공사가 지금 까지 10여년이상 운영한 비축기지에서 화재나 환경오염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비축기지는 많은 양의 유류를 저장하고 있을 뿐 어떤 화학적 처리를 하거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은 전혀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유사시 수도권 민생용 유류 공급을 위해 경기도 용인읍에 추진중인 기지건설 후보지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지역인데 동자부와 석유개발공사가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 하려한다는 오해가 일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마치 모든 산업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한 것처럼 알려진 결과라 생각되지만 환경청고시 제90-16호('90. 7. 19)에 의하면 특별대책지역이라도 오수 배출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할 경우 공공시설 입지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기지의 경우 배출수는 1급 식수기준인 5PPM이하로 방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적 입지로 선정하였다.

한편 저유탱크가 파괴되었을 경우(실제로는 전쟁 발발 이외에는 가능성이 없음)에 대비하여 누출될 수 있는 유류를 100% 가둬둘 수 있도록 탱크주위에 1차 방유제(독)을 설치하고 기지안에 제2차 방유제도 설치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지 밖으

로는 단 한방울의 유류도 새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 상수원 오염문제는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사가 지금까지 10여년이상 운영한 비축기지에서 화재나 환경오염 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로 주민들은 기지가 들어서면 인근의 땅값이 하락한다고 지역내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근거가 희박하다.

지역사회에 비축기지가 건설되면 현지에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확충되고,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세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 파급효과로 현재 10여년이상 운영중인 비축기지 인근 땅값은 전국 평균 지가 상승율을 훨씬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방자치단체 평균 지가상승율을 2배이상 상회하여 땅값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축기지 건설 추진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애로사항은 현지 주민들이 과다하게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를 사들일 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명분좋은 일도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세금으로 특정인들에게만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공공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및 적정성에 맞추어 용지매수에 협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공사는 비축사업추진이 정체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 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지인근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성실히 설득하고 기지 건설에 신중을 거듭하여 모든일을 추진하고 있다.

만의하나 추가비축사업이 지연될 경우 매년 월동기마다 되풀이 되어 겪는 석유제품 수급파동, 그리고 수년내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3의 석유위기가 국 민경제에 휘몰아칠때 비축기지 인근 주민들을 포함하여 우리국민 전체가 당하는 고통은 제1, 2차 석유위기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판단된다.

추가비축기지 인근주민들이 이와 같은 점을 십분 이해하여 국가적인 공동체의식 및 건강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비축기지가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우리는 과거의 석유위기를 거울삼아 제3의 석유위기를 대비하는 석유비축사업이 갈등과 대립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과 합의를 형성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④동력자원부공고제91-31호

### 사단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991년 10월 14일

동력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제91-31호

2. 허가년월일 : 1991년 10월 9일

3. 명 칭 : 사단법인 해외석유개발협회

4.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85-1

5. 대표자 : 유각종

6. 설립목적 : 해외석유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회원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 도모